

개정 전(구.외환은행)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적용범위 (생략)</p> <p>제2조 이자</p> <p>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에 섰하여 기준일 <u>다음날</u> (이하 '원가일'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 <u>다만, 당좌예금과 은행이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.</u></p> <p>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<u>넷째주 토요일</u></p> <p>2.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: <u>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넷째주 토요일</u></p> <p>② 제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<u>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</u>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섰한다.</p> <p>③ 제①항의 은행이 정한 기준은 영업점에 놓아 두거나 게시한다.</p> <p>④ 제①항의 은행이 정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한다.</p> <p>제3조 거래중지계좌 ~ 제14조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 (좌동)</p> <p>제2조 이자</p> <p>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섰하여 기준일 <u>의일</u> (이하 '원가일'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 <u>다만,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, 은행에서 정하는 예금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 <p>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<u>제3금요일</u></p> <p>2. <u>저축예금</u>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<u>제3금요일</u></p> <p>3. <u>자유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</u>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<u>제3금요일</u></p> <p>② 제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<u>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</u>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섰한다.</p> <p>③ <삭제></p> <p>④ <삭제></p> <p>제3조 거래중지계좌 ~ 제14조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(좌동)</p>	<p>(구.하나은행의 결산일과 일치)</p> <p>(결산이자 계산 방식 변경)</p> <p>(구.하나은행 항목과 일치)</p>